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예정(‘26.6.3.)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4 신설)

나. 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 신설(안 제13조의5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금융회사의 범위) 법 제2조제2의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3조의5(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 ① 법 제20조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우수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포상
2. 우수금융회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대 정책
3. 우수금융회사 상생협력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4(금융회사의 범위) 법 제2조제2의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u> <u>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u> <u>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u> <u>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u> <u>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u> <u>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u>
<u><신 설></u>	<u>제13조의5(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 ① 법 제20조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u> <u>1. 우수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에 대한 포상</u> <u>2. 우수금융회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대 정책</u> <u>3. 우수금융회사 상생협력 우수 사례에 대한 홍보</u>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903